2. 租稅減免規制法中改正法律

법률 제5,402호 1997. 8. 30

주 요 골 자

가. 벤처기업 창업투자재원의 원활한 조달과 창업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거주자에 대하여 그 출자액의 20퍼센트를 과세소득에서 제공함(법 제13조의 3).

나. 종전에는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기업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30퍼센트까지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감면대상기업의 범위를 중기업에까지 확대하여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면율도 50퍼센트까지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통한 경영안정을 지원하도록 함(법 제33조의2제1항).

다. 근로자의 저축을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매월 5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80조의5).

라. 중소기업의 자기자금조달을 통한 재무구조개선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는 그 증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자후 2년간 과세소득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93조제1항 및 제7항).

마.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설한 도로·항만시설 등 제1종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법 제100조제1항제7항).

개정이유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창업촉진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어 벤처기업의 창업투자재원의 원활한 조달과 창업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세제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기자금조달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세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를 세제면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물류비의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외국인투자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한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자를 지원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제17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3 조의3(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에 대한 소득제공)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득공제의 신청 기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8 조2(사회간접자본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특례)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가 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2년이상인 채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간접자본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동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5로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중 "영세중소사업자"를

"중소사업자"로 하고, 동조제1항중 "영세중소사업자"를 "중소사업자"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38조의 제목중 "금융기관"을 "금융기관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양도함으로써"를 "양도하거나 성업공사가 취득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을 양도함으로써"로 하며, 동조제2항중 "2년"을 "2년(성업공사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제40조중 "법인의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법인세법 제19조제5호"를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제4호 또는 법인세법 제19조제4호·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인의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동 법률에 따라 합병(영업의 전부양도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40조의2의 제목중 "금융기관"을 "금융기관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금융기관은"을 "자는"으로 한다.

① 제4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영업의 전부를 양수한 금융기관과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합병조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합병등기일 또는 영업의 전부양수일부터 5년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제4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전부양도는 법인 세법 제59조의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자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명세를 합병등기일 또는 영업의 전부양수일부터 6월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확인받은 명세
2. 합병조합인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

합병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합 합병추진협의회로부터 확인받은 명세

제47조제2항 단서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 단서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로, "인가"를 "허가"로 하고, 동조제4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1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합위원회(이하 "월드컵축구대회 조합위원회"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61조제3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제64조제1항제4호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한다.

제79조제4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제8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80 조의5(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① 연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매월 50만원의 범위내에서 3년이상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근로자우대저축"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근로자우대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체결일부터 3년내에 근로자 우대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체결, 근로자우대저축취급기관의 저축자료 제출 기타 소득세비과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9절에 제9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92 조6(국외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특례)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으로 본다.

1. 국외에서 근무하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거주자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나목에 규정된 자. 다만, 당해인이 교육법에 학교와 유사한 국외교육기관의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에 한한다.
2. 국내에서 근무하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각목에 규정된 자. 다만, 당해인이 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 또는 학생이 소득세법 또는 상속세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학자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제공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기타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3조제1항중 "제조업·부가통신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과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영리법인에 한한다)이 법인외의 자,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199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9항을 공제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출자의 범위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등의 범위 기타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제4호마목 및 제5호가목중 "배합사료"를 각각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100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0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방자치단체 및 월드컵축구대회조

합위원회가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 제작이 곤란한 것.

제10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지방자치단체 및 월드컵축구대회조합위원회가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제111조에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월드컵축구대회조합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20. 중소기업창립지원법에 의한 창업자(동법 제3조의 업종을 창업한 자에 한한다)가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통장·계약서 등

제112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선수의 과학적 훈련용기자재를 포함한다)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월드컵축구대회조합위원회가 수입하는 물품

제1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40조제2호에 해당하는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6. 성업공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제11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성업공사가 제1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제117조제5항·제7항 및 제8항중 "외자도입법"을 각각 "외국인투자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4호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제20조"를 "제13조의4·제20조"로 하며, 동항제4호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제2호중 "및 성업공사"를 삭제하고, 제37호중 "노동조합법"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하며, 제137호중 "재단법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유도위원회"를 "재단법인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합위원회"로 하고, 동표에 제145호 및 제14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5.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146. 사회간접투자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2호 및 별표 제2호·제145호의 개정규정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원천징수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8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 3 조(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의3 및 제11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2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93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에 증자하는 것으로서 1997년 1월 1일이후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 4 조(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1항·제38조 및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 5 조(의제배당소득 등의 비과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3조제1항 및 제11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 6 조(공공법인에 관한 적용례) ① 제61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1조제3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제137호·제145호 및 제14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99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100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제2항제6호·제103조제8호 및 제112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11조제19호 및 제2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제80조의4"를 "제80조의4·제80조의5"로 하고, 동조 제4호의2중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을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과 동법 제92조의6의 규정에 의한 국외교육비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